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소득 세액정산과 관련하여 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정산 방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24. ~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2조의2제3항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는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과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times \frac{\text{인출퇴직소득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누계액}}$$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른 통보”를 “따라 통보”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단에 따른 퇴직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14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제2항제1호에서 같은 항 제2호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라 한다)을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연퇴직소득이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금계좌별로 안분해야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

합투자증권저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2조의2 및 제20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이연퇴직 소득세누계액} \times \frac{\text{인출퇴직소득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누계액}}$ ④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제203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계산한 정산후이연퇴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조에서</u> ----- ----- ----- ----- ----- ---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는 해당 연금외수령

직소득세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
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생 략)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
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
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
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
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
액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과 제203조제5항에 따
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
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인출퇴
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
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

$$\text{이연퇴직} \times \frac{\text{인출퇴직소득누계액}}{\text{소득세누계액}} \div \text{이연퇴직소득누계액}$$

⑤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미 지
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
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
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단
에 따른 퇴직자에게 재정경제부

의무자는 전단에 따른 퇴직자에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 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A - (B + C + D)$$

A: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B: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

C: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 및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D: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 = E x (F / G)

E: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F: 정산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을 뺀 금액

G: 퇴직소득누계액

③ · ④ (생략)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 중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

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제2항제1호에서 같은 항 제2호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

에 대해 제202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⑦ (생략)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라 한다)을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연퇴직소득이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금계좌별로 안분해야 한다.

⑥ ----- 따라 통보-----
-----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

-----.

⑦ (현행과 같음)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
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
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말한다.

1. ~ 5의2.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
입액

가. ~ 라. (생략)

<신설>

마.·바. (생략)

7. ~ 10. (생략)

② ~ ⑦ (생략)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
조의28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
축

마.·바. (현행과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2